매매내역 등의 통지방법에 대한 고객확인서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거 하나은행은 고객과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 내역 및 월별(또는 분기별) 매매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고객은 다음의 지정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합니다.

1. 매매체결에 따른 해당 매매에 관한 거래확인서

하나은행과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확인 업무를 아래 명시한 직원에게 위임하며, 아래 선택한 발송 방법으로 거래확인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명	부서 및 직급	전화번호	거래확인서 발송 방법 (복수선택 가능)		
			□ 팩스	□ 이메일	□ 기타

※ 기타 방법 (SMS 등)을 지정하는 경우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담당자로 인해 추가 기재가 필요한 경우 상기 표의 내용을 명시하여 별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월별 장외파생상품 매매명세

익월에 발송되는 월별 장외파생상품 매매명세를 아래 주소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항목의 박스에 체크)

□ 수령

주소 (필수, 상세주소 명기) :

팩 스 (선택) :

이메일 (선택) :

□ 수령거부

20 년 월 일

(고객명) : (서명/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유의사항

1. 장외파생상품 매매체결에 따른 해당 매매에 관한 거래확인서는 통지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매매내역 등의 통지가 3회이상 연속하여 반송되는 경우 더 이상 통지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고객이 해당 영업점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에서 지체없이 고객의 요청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고객에게 통지하는 매매내역 등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은행 준법지원부 (전화 : 02-3788-534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고객번호]

5-10-0012(1-1) (2022.11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10년)

하나은행